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84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강득구·김영환·이학영

문정복 • 민병덕 • 윤종군

정을호 · 이광희 · 채현일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선거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함.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큰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더욱이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 · 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

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 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추천 제한)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정당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정당을 포함한다)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7조의3(정당의 대통령선거 후
	보자 추천 제한) 법 제47조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소
	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
	<u>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를</u>
	지어 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정당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해당 정당의 권리・의
	무를 승계한 정당을 포함한다)
	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
	다. 이 경우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포함한다.